



# 도축장은 없고 법은 시행되고...

## - 사슴자가도축 금지, 준비없는 법집행 농가 반발 -

2003년 1월 1일부로 사슴의 자가도축이 전면 금지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사슴, 닭, 오리, 토끼, 꿩,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8개 가축은 소, 돼지, 양, 말과 더불어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뜻을 박고 있다. 정식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자가도축, 판매를 실시할 경우 1억원 미만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양록농가들은 사슴의 자가도축 금지가 양록농가의 소득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법집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식품으로 주로 가공되는 사슴은 소비자가 농장을 방문, 모든 가공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고려치 않은 법집행이라는 것. 설사 도축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년중 사슴 몇 마리 도축을 위해 사슴전용 운반차와 냉동차를 구비해야 하는 비용부담은 영세 농가에게 있어서는 꿈도 꾸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슴농가들의 소득감소는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당장 사슴을 도축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슴도

축을 정식 허가를 받은 도축장(2002년 12.31 기준)은 전국에 불과 13곳(도표 참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또한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로 국한돼 타 지역 농가들은 이용할 도축장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더욱이 농림부가 정식 허가를 냈다고 발표한 13곳의 도축장 중 실제로는 아직 사슴에 대한 도축여부조차 결정을 짓지 못한 곳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농림부가 사슴도축 허가 도축장이라고 발표한 A도축장은 “아직 사슴에 대한 도축 가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히고 “농림부로부터 사슴 도축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농림부와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충분한 홍보·제도 및 보완 기간으로 잡고 올 7월 1일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 도축 대상 가축의 수급·도축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회는 사슴은 현장 적용이 어려



운 법령 정비 축종임을 주장하며 고기용으로 유통시키는 대량 도축은 정식 도축장을 통해, 중탕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도축은 농가에 위생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 설치 후 자가도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자가소비용으로 사슴의 자가도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전북과 경기 지역(인구밀집 지역 제외, 본문기사 참조)이며 경남 및 충북, 강원 등 타 지역도 조만간 자가도축 가능지역으로 고시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양록**

■ 사슴 허가도축장 현황(2002. 12. 31 기준)

시·도명	도축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축종
경기	우진산업	광주시 퇴촌면 열미리 502-4	031-762-6451	사슴
강원	평창기업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07-4	033-332-7064	"
	낙원산업	정선군 남면 문곡 1리 51-1	033-591-0068	"
	하이마트21	원주시 가현동 438-3	033-732-1300	"
	영월축산기업	영월군 남면 북쌍리 194-2	033-374-7123	"
	설악축산기업	고성군 토성면 안흥리 163-1	033-636-3434	"
전북	금호실업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38-1	063-453-5549	"
	동백물산	남원시 대신면 대곡리 195-3	063-625-8118	"
	신보광산업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1061-1	063-571-7551	사슴, 토끼
	고창도축장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327-22	063-563-3900	"
	서림유통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308	063-583-3838	"
경북	옥산타조물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92	054-455-0191	"
제주	제주축협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33	064-799-5135	"

■ 법령해설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밀도축), 검사관(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운반·진열한 자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가소비지역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육판매업소, 음식점 등에 공급한 자는,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